

「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4월 7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4월 16일

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김 팔 근

나. 제안이유

- 새마을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분야별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정비(안 제3조)
 - 가) (당초)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개최 및 지원,
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21세기 새마을운동 전개 지원,
새마을 알뜰벼룩장터 운영
 - 나) (변경)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,
새마을운동 계승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,
청년 등 미래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
혁신활동 사업
- 2) 용어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3조,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- 2)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3) 기 타 :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과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○ 본 조례안은

- 새마을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분야별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지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존의 '새마을의 날 행사'나 '알뜰벼룩장터'와 같은 단발성·행사성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교통안전, 환경정화,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역량을 활용한 봉사활동 조직의 운영 및 사업으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실제 활동 중인 단체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산 지원의 명분이 확보된 만큼 개정된 조례가 단순히 특정 단체의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 혁신과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 론 요 지

- 제3조 제6항에 명시된 '미래 세대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혁신 활동'이라는 표현 중, '자발적인'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고, '혁신'이라는 용어를 '공헌'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